

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박상구 의원 (찬성자 32명)

나. 의안번호 : 제2560호

다. 발의일자 : 2021. 8. 10.

라. 회부일자 : 2021. 8. 18.

2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 예규인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개정으로 ‘신기술·특허공법 선정기준’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을 재정립 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리함.(안 제4조, 제5조제2항제2호나목)
-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신기술 선정 기능을 삭제함.(안 제5조제1항제3호, 제6조제2항)
-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·자문 요청 대상을 확대함.(안 제5조제3항)
- 신기술 미반영 시 자체공법선정위원회 필수 의결조항을 삭제함.

(안 제10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건설기술진흥법」, 「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」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(이하 “행안부”) 예규인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이 개정(행안부 예규 제135호, ‘21.4.1. 시행)되면서 ‘신기술·특허공법 선정기준’이 별도로 마련됨에 따라, 현행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기능 중 신기술 선정기능 등 신기술 선정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행안부 예규로의 일원화를 기하는 한편,
- 위원회 심의·자문 요청 대상의 확대 및 인용 범명의 불일치 해소 등 조례 운용상 미흡한 부분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.

[표]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4조(설치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소속으로 신기술의 활용·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훈령 「 <u>신기술 현장적용기준</u> 」에 따른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	제4조(설치)	----- ----- -----	「 <u>건설 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</u> 」----- -----.
제5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~ 2. (생략) <u>3.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(제2항 제2호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)</u> 4. (생략) <u>5. ~ 7. (생략)</u>		제5조(기능) ①	----- ----- -----	1. ~ 2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3. (현행 제4호와 같음) 4. ~ 6. (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)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(생략)

2.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아래 각 목의 기술

가. (생략)

나. 「전력기술관리법」제6조의2에 따른 전력신기술

다. ~ 라. (생략)

3. (생략)

③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6조(심의·자문 요청) ①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제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별도로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(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)을 선정하여 선정 사유와 함께 제출한다.

제10조(설계반영의무) ① 발주청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

② 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나. ~ 다. (현행 다목 및 라목과 같음)

3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6조(심의·자문 요청)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
<삭제>

제10조(설계반영의무) 발주청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

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,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,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(이하 "신기술개발자"라 한다)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,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발주청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,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.

제14조(자료추적 및 활용)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추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제5조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
3. (생략)

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,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,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(이하 "신기술개발자"라 한다)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<삭제>

제14조(자료추적 및 활용)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제2호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○ 안 제4조의 경우, 위원회 운영 근거로 인용한 국토교통부 훈령 「신기술 현장적용기준」이 2014.12.10일 폐지되고 「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」(‘15. 6. 30.제정)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○ 안 제5조의 경우는 위원회의 자문사항 중 제5조제2항제2호나

목의 ‘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6조의2에 따른 전력신기술’을 삭제하고 있는데,

- 이는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6조의2가 규정하고 있던 전력신기술 인증제도¹⁾가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상의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²⁾와 유사하여 2016.1.6.일 폐지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례 현행화를 위해 필요하다 하겠음.
- 다음으로, 현행 제5조제1항의 위원회 심의 기능 중 제3호의 신기술 선정 기능, 제6조제2항의 신기술 선정심의 의뢰 방법, 그리고 제10조제2항의 신기술 미반영 사유의 설계보고서 기록 의무 규정에 대해 본 개정안은 이들 모든 항을 삭제하고 있음.
- 이들 항은 모두가 신기술 선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2020. 12.30일 행안부 예규인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이 개정(‘21.4.1. 시행)되면서 제4장의 제한입찰 운영요령〈별표2〉에 신기술·특허공법 선정기준이 새로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준치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.
- 즉, 현행 조례의 ‘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는 신기술 선정 및 자문 기능은 서울시 발주부서가 운용 중인 ‘자체공법선정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신기술에 대한 적정성 평가나 또는 3개의 후보군 중 1개의 신기술을 최종 선정하는 기능에 해당

1) 전력신기술 인증제이란?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것으로서 신규성, 진보성,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을 정부(산업통상자원부장관)가 보호해주는 제도 (1997년 최초 도입 → 2016년 폐지)

2)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2(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.

하는데,

- 행안부 예규의 신설로 인해 그동안 서울시가 신기술 선정에 활용하였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방침('13.5.27, 기술심사담당관)에 따른 '자체공법선정위원회와 「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'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, 그리고 본 조례에 의한 '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는 신기술 선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능을 다했다 할 것이며 결국, 행안부 예규에 따른 '공법선정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하는 상황임.
- 이로 인해 신기술 선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안부 예규의 강화된 선정 절차에 따라 신기술 선정 절차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본 개정은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음.

[표] 신기술·특허공법 관련 선정위원회 현황

구 분	서울시		행안부
	자체공법선정위원회	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	공법선정위원회
성 격	비 법정	법정	법정
근 거	행정2부시장 방침('13.5.27) -기술심사담당관-	서울시 조례('19.5.16) -재무국-	행안부 예규('21.4.1) -행정안전부-
기 능	1개공법 및 후보군 선정	1개공법 선정	1개공법 선정

※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신기술은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됨

- 마지막으로, 현행 조례 제5조제3항 즉,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(이하 '설계VE')를 시행하는 건설공사(총공사비 100억원 이상)의 경우 위원회 심의

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예외규정을 본 개정안이 이를 삭제하고 있음.

- 이는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의 건설기술심의 대부분이 기본 설계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결정하는 신기술의 적정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,
- 신기술의 종류가 다양하고 어떤 신기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해당 공사의 전체적인 품질이 좌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려할 때 충분히 의미 있는 조치라 하겠음.

[붙임] 1. 신기술·특허공법 선정기준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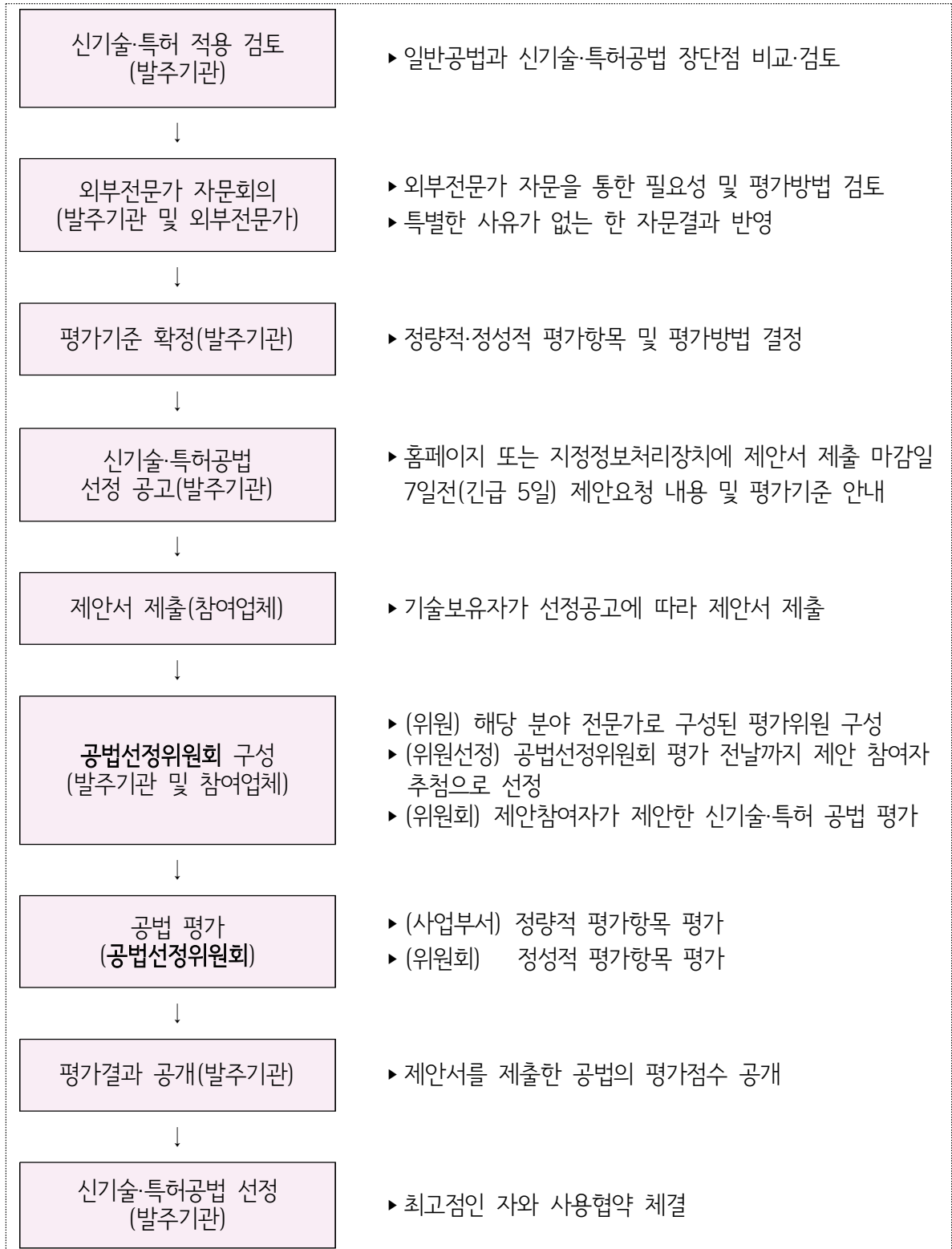
2. 행안부 예규의 신기술·특허공법 선정 절차

3. 행안부 예규의 평가 및 배점 기준

[붙임 1] 신기술·특허공법 선정기준 비교

구 분	서울시 특정기술 선정 조례('19.5.16. 제정)	행안부 예규('21.4.1. 시행)	비 고
대상 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기술 특허 공법 순공사원가 1억원 초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기술·특허공법 추정금액 1억원 이상 ※ 순공사원가로 환산시 약 7천만원 이상 	대상확대
위원 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원장 : 실국본부장 등 • 위원수 : 외부위원 과반 수 - (10억미만) 5명이상 / (10억이상) 7명이상 • 선정방식 : 발주부서에서 선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원장 : 위원 중 호선 • 위원수 : 외부위원만으로 구성 - 7명 ~ 10명 이내 • 선정방식 : 평가 전 예비명부 추천 선정 	내부위원 배제 추첨으로 선정
후보 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부서 사전조사 및 검토 후 정량평가로 선정 - 시 '건설알림이' 등록 특정기술 활용 - 저가, 고가순으로 배제하여 5개 이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부서 사전조사 및 검토 + 공법 선정 공고(홈페이지 등)후 정량평가로 선정 - 위원회 상정 공법수를 제한하여 평가 가능 (공고 시 명시 必) ※ 추정금액 초과 공법 평가 제외 가능 	공고절차 추가
평가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량평가(가격) : 정성평가(기술) = 50:50 ※ 건설신기술 가점 2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량평가(가격+경영):정성평가(기술) = 20:80 ※ 배점한도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※ 건설신기술 가점 없음 	기술점수 확대
평가 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별도 공개 절차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부평가점수 및 위원명단 공개 	결과공개

[붙임 2] 행안부 예규의 신기술·특허공법 선정 절차



[붙임 3] 행안부 예규의 평가 및 배점 기준

구분	평가항목(예시)	평가기준(예시)	배점한도	비고
합계			100	
정량적 (객관적) 평가분야	공사비	-제안된 신기술·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	20	■ 사업담당자가 평가
	경영상태	-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		
정성적 (주관적) 평가분야	시공성	-공사기간 -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-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	80	■ 평가위원이 평가
	안전성	-구조적 안전성 -내구·내진·내화·내습성 -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		
	유지관리	-하자발생 가능성 -유지관리 용이성 -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		
	경관성	-색상, 모양 등 디자인 -외부마감 상태 -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		